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 업 협 약 서

- 사업명(유형명) : 경상북도 RISE 체계(K-GKS)
- 대학명 : 대구대학교
- 사업단(팀)명 :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 2025년 3월 부터 2028년 2월 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25년 3월 부터 2026년 2월 까지
- 당해연도 사업비 : 273,712천원(국비: 136,856천원, 도비 136,856천원)
- 협약 당사자
 -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 대구대학교 총장
-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기획처 직급(위) : 처장 성명 : 함요상

위 경상북도 RISE 체계의 수행에 관하여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계획) 경상북도 RISE 체계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① 협약기간은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③ 기존 사업과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기존 사업 기간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협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대구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 등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 시기 및 방식은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대구대학교 총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지원 조건)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목표) 대구대학교 총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운영규정' 및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대구대학교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대구대학교 총장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수혜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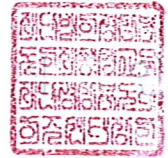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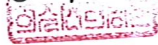
제12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운영규정' 또는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 및 '관리운영 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년 3 월

경상북도RISE센터장 김 용 현



대구대학교 총 장 박 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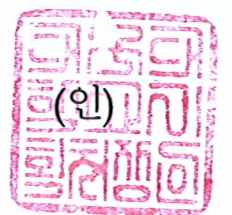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소속 : 기획처

직급(위) : 처장

성명 : 함 요 상

(인)



『2025년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 업 협 약 서

- 사업명(유형명) : 경상북도 RISE 체계(K-GKS)
- 대학명 : 대구대학교
- 사업단(팀)명 :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 2025년 3월 부터 2028년 2월 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25년 3월 부터 2026년 2월 까지
- 당해연도 사업비 : 273,712천원(국비: 136,856천원, 도비 136,856천원)
- 협약 당사자
 -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 대구대학교 총장
-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기획처 직급(위) : 처장 성명 : 함요상

위 경상북도 RISE 체계의 수행에 관하여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계획) 경상북도 RISE 체계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① 협약기간은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③ 기존 사업과의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 기존 사업 기간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협약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3조(사업의 수행)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대구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 등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 시기 및 방식은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권한과 책임)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대구대학교 총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지원 조건)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목표) 대구대학교 총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항에 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운영규정' 및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대구대학교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대구대학교 총장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수혜 제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및 환수, 평가 시 반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운영규정' 또는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 및 '관리운영 규정'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경상북도RISE센터의 장, 대구대학교 총장과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5 년 3 월

경상북도RISE센터장 김 용 현



대구대학교 총 장 박 순 진



대학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소속 : 기획처

직급(위) : 처장

성명 : 함 요 상

